

## CONSULTATIVE BODY

ISSUE PAPER

CHECK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 새로운 원하청 산업안전보건협의체계 구축의 필요성

### ● 들어가며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589명 중에서 하청노동자는 281명으로 47.7%에 달했다. '50인 이상 제조업 및 기타 업종'과 '50억 이상 건설업'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5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하청노동자는 179명으로 71.6%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나타난 것일까? 이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험의 외주화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한 공정, 업무 등이 하청으로 외주화되어, 안전보건을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역력이 부족한 하청에 산재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더욱이 원하청 구조는



그 자체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므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충분하더라도 산재를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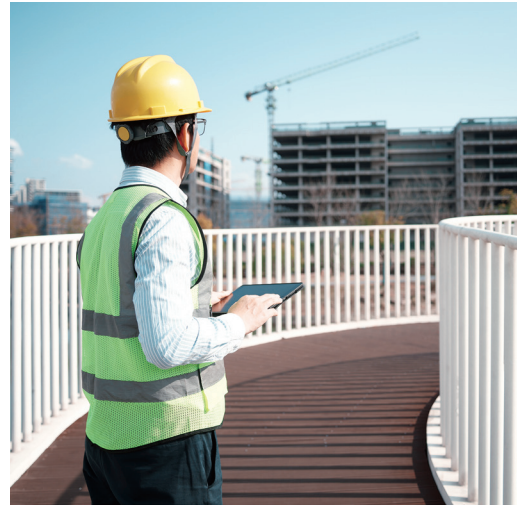
결국,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해결책이다. 따라서 우선 원하청 구조가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양한 원하청 유형 중에서 건설업과 사내하청은 그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설업과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원하청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①</sup>

## ● 건설업과 사내하청의 원하청 구조가 지닌 구조적 취약성과 새로운 원하청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축의 필요성

건설업과 사내하청은 원청 소속의 노동자와 하청 소속의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적, 조직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과 사내하청의 특수성은 산재 예방 주체의 불명확성, 원하청 간 의사소통의 불완전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하청의 해결 권한 부족,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 및 기술의 불완전한 공유, 산재 예방을 위한 의사표현 및 이익 대변 부족 등 산재를 야기하는 다양한 구조적 취약성을 파생시킨다.

정부가 그동안 건설업, 사내하청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구축했던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건설업, 사내하청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해법과 연계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 중심으로 법제도 및 정책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건설업, 사내하청의 원하청 구조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원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산재 감축을 위한 가장 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 건설업, 사내하청의 원하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구조적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실효성 있는 원하청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축하는 것이다.

원하청 사업주 및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 산재 예방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건설업, 사내하청의 구조적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① 이하 내용은 “권혁·전형배·이현재·유성규(2025), 도급사업장의 실효적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 필자가 작성한 원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대책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기존 협의체의 문제점과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신설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도급인의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의체는 협의 기능만을 갖고 있고 심의·의결 기능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동 협의체의 협의 사항에 산재 예방을 위한 필수적 사항들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 하청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결과, 동 협의체가 산재 예방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단위로 기능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존재하거나 회의 개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원하청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효과적인 산

재 예방 대책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내하청에서 산재가 다발하는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제도의 실효성, 제도 운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화 대상은 사내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 원하청 개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하나의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원하청 개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상기 2개의 구성 방안 중 해당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원하청이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 구성 및 활동 보장, 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사항 및 효력 등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른 기존 협의체의 문제점과 '새로운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 노사협의체' 구축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의체의 구성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 사항으로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구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법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는 동 협의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대표는 동 협의체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산재 예방을 위한 원하청 노사의 공동 논의 및 결정이 필수적인 건설 현장에서 동 협의체 자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동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산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영세업체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동 협의체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 협의체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건설공사 원하청 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동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하청 개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 구성 및 활동 보장, 위원회 운영, 심의·의결 사항 및 효력 등 새로운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 구성의 경우,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하청의 대표자와 노동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